

2023학년도 1학기

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서

학부(과)/전공		학년		학번	
성명		연락처			

순	강좌번호-분반	교과목명	학점	이수구분	교과목 담당교수	지인관계
1	-				(인)	
2	-				(인)	
3	-				(인)	
4	-				(인)	
5	-				(인)	
6	-				(인)	
7	-				(인)	

< 관련 규정 : 학사운영규정 >

제16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수강신청) 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, 형제, 친인척(4촌 이내)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.

② **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**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**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, 승인받아야 한다.**

제29조의 2(교직원-지인 간 성적처리)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, 출석, 과제,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2023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학 부 (과) 장 : (인)

경일대학교 교무처장 귀하